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정보리포터 모집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외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안전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외정보리포터」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4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지원자격

-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이하 “식의약품 등”이라 한다)등의 안전관련 정보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
 - ① 식의약품 등 관련 전공자
 - ② 식품의약품 등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③ 현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단, ③은 ①, ② 선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2. 주요 업무내용

- 해외 현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식·의약품 등 안전정보 수집·보고

1. 정부 또는 기업의 식의약품 등 안전관리 및 정책 동향
2. 식의약품 등 관련 질병정보 및 사망사건 정보
3. 식의약품 등 관련 위해물질 정보
4. 위해식의약품 등 회수 및 부적합 정보
5.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관련 부작용 정보
6. 기타 식약처장이 요청하는 식의약품 등 안전관련 정보

- 식·의약품등 관련 학회 동향 및 연구 논문에 관한 조사·수집·보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를 요청한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 수집·보고

3. 모집인원

- 총 56개국 104명
- 교체대상자 39개국 66명

구분	국가	모집인원	구분	국가	모집인원
1	중국	5	21	벨기에	1
2	홍콩	1	22	영국	1
3	미국	6	23	오스트리아	1
4	브라질	1	24	칠레	1
5	아르헨티나	2	25	노르웨이	2
6	일본	1	26	인도	1
7	태국	3	27	페루	2
8	베트남	3	28	스리랑카	2
9	필리핀	1	29	러시아	1
10	인도네시아	1	30	파키스탄	2
11	대만	3	31	폴란드	1
12	싱가폴	1	32	아일랜드	1
13	뉴질랜드	1	33	미얀마	2
14	말레이시아	1	34	체코공화국	2
15	프랑스	1	35	콜롬비아	2
16	독일	1	36	스웨덴	2
17	스위스	1	37	포르투갈	2
18	이탈리아	1	38	아랍에미리트	2
19	덴마크	2	39	핀란드	1
20	스페인	1			

- 중동·아프리카 17개국 38명

구분	국가	모집인원	구분	국가	모집인원
1	사우디아라비아	3	1	남아프리카공화국	2
2	쿠웨이트	3	2	이집트	2
3	카타르	3	3	가나	2
4	이스라엘	2	4	나이지리아	2
5	요르단	2	5	모로코	2
6	이라크	2	6	알제리	3
7	레바논	2	7	에피오피아	2
8	이란	2	8	케냐	2
			9	탄자니아	2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4. 8.(월) ~ 2019. 4. 30.(화)
- 접수방법
 - ① 해외정보 보고시스템(<http://www.mfds.go.kr/foodinfo/index.jsp>)접속
 - ② “활동신청” 클릭(화면 오른쪽 상단)
 - ③ **활동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활동신청서 내용이 서류 심사에 반영되오니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학위증명서, 재직(학)증명서, 경력증명서, 해외 체류확인서(제외국민등록부등본 등)는 **이메일(dragon1180@korea.kr)로 제출**
 -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문의
 - 전화번호 : 043-719-1761 / 팩스 : 043-719-1750
 - 이 메 일 : dragon1180@korea.kr, juzzang@korea.kr
 - 주 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5. 전형 절차

- 1차 : 서류심사(5.1. ~ 3.)
- 2차 : 해외정보리포터 선발위원회 심사(5.7. ~ 13.)
 - 심사기준 : ①전공 등 지원분야의 적합성, ②최종학력 및 관련업종 경력사항, ③체류기간을 통한 현지적응 정도 심사, ④현지 언어 구사능력(필요시 추후 관련 서류 제출), ⑤제출 서류 충실도 및 적극성 등을 종합하여 심사
- 합격자 발표 : 2019.5.14.(화)
 - 개별(이메일) 통보
 - ※ 합격자 발표일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해외정보리포터 활동 예정일 : 2019년 6월부터

6. 수당지급

- 수시·심층 보고서 제출 수당

(단위 : 원)

보고서 평가등급	수시보고(1건)	심층보고(1건)
매우우수	110,000	360,000
우수	90,000	280,000
보통	70,000	200,000
미흡	50,000	120,000
매우미흡	미지급	미지급

- 회의 참석 수당
 -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회의에 참여 할 경우 1회당 100,000원을 지급
 - ※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

7. 해외정보리포터 의무사항 및 이행사항

○ 해외정보리포터 의무 사항

- ① 식의약품 등의 현지 언론, 업계, 학계, 소비자 단체 등의 발표 자료, 여론동향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수시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함
- ② 식약처장이 식의약품 등에 대한 특정이슈 조사를 요청할 시,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조사·수집하여 제출해야 함
- ③ 해외정보리포터 역량강화를 위한 식의약품 등의 교육(화상교육)에 참여해야 함

○ 해외정보리포터 기타 이행 사항

- ① 개인정보(이메일, 핸드폰/전화번호, 주소, 은행계좌번호 등)의 변동이 있는 해외정보리포터는 해당 내용을 위해정보과에 즉시 알려야 함
- ②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숙지하여야 함

8. 기타

- 응시원서 등의 잘못된 기재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 결과 모집국가의 모집인원이 없을 경우 연장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서류검토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합격취소, 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 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82-43-719-1761, dragon1180@korea.kr)

[붙임]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

위해정보과-1709호(2013.10.02., 제정)

위해정보과-2321호(2013.11.27., 개정)

위해정보과-1410호(2014.05.30., 개정)

A0-2015-6-003(2015.07.20., 개정)

A0-2016-6-004(2016.05.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가 해외 현지정보 수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위촉한 해외정보리포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정보리포터”란 유학생, 교민, 상사직원 등과 같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이하 “식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련 정보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해외정보리포터 지원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2. “수시정보”란 해외정보리포터가 식의약품등에 관한 현지의 언론, 업계, 학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발표 자료와 여론 동향을 수시로 수집하여 보고하는 정보를 말한다.
4. “심층정보”란 해외정보리포터가 식약처장이 식의약품등의 특정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요청한 사항을 상세하게 수집하여 보고하는

정보를 말한다.

5. “전담 해외정보리포터”란 2년간 해외정보리포터의 정보수집 활동 등을 별표 8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된 리포터로서 유럽, 북남미 지역의 식의약품등 관련기관을 전담하여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정한 리포터를 말한다.

6.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이란 해외정보리포터가 식의약품등 해외위해정보를 웹사이트(<http://www.mfds.go.kr/foodinfo/index.jsp>)상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해외정보리포터의 자격 및 선발) ① 해외정보리포터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식의약품등의 관련 전공자

2. 식의약품등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해당 국가의 전공자 및 경력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해외정보리포터로서 선발하고 년 2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한다.

② 해외정보리포터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서식의 해외정보리포터 지원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해외정보리포터는 서류심사 및 제4조에 따른 해외정보리포터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제4조(해외정보리포터평가위원회 운영) ①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의 선발과 해외정보리포터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식약처 위해정보 관련 부서의 과장 및 사무관(연구관) 등 내부 전문가
2. 식의약품등의 관련 학과 교수,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을 위하여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전문가

③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임기, 회의 및 수당 등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해외정보리포터 위촉 국가 및 인원) 해외정보리포터의 위촉국가와 인원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국가와 국가별 수입식품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해외정보리포터의 의무 등) ① 해외정보리포터는 식의약품등에 관한 현지 언론,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발표 자료와 여론 동향을 수시로 수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 해외정보리포터로 지정된 리포터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후 6시 이후부터 유럽, 북남미 지역에서 발생하는 식의약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다음날 오전 9시 전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외정보리포터는 식약처장이 특정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요청한

사항을 상세하게 수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해외정보리포터는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수집 범위 등) ① 수집정보 보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기업의 식의약품등 안전관리 및 정책 동향
2. 식의약품등 관련 질병정보 및 사망사건 정보
3. 식의약품등 관련 위해물질 정보
4. 위해식의약품등 회수 및 부적합 정보
5.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관련 부작용 정보
6. 유럽식품안전청(EFSA),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식품의약품청(FDA), 캐나다연방보건부(Health Canada)등과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생하는 정보(전담 해외정보리포터에 한한다.)
7. 기타 식약처장이 요청하는 식의약품등 안전관련 정보

② 수집정보 보고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 제조 등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 식당, 음식점, 시장 등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등 정보
2. 소규모 도시에 국한된 사안으로 지엽적인 정보
3. 단순 인터넷정보(다만, 최초보고서는 제외한다)

4. 정보의 중복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정보
5. 정보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집요청 및 보고된 정보

제8조(정보의 보고방법) ① 해외정보리포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시정보를 별표 3서식의 최초보고서에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고, 식약처장이 구체적인 추가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4서식의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해외정보리포터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특정 정보에 대하여 조사·보고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별표 5서식의 심층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해외정보리포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어려운 경우 전자메일, 팩스, 전화를 통해 우선 보고 후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사후 등록 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정보의 취급) 해외정보리포터가 제8조에 따라 보고한 정보 중 ‘수시정보’는 ‘위해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계부서에 제공하고, ‘심층정보’는 ‘해외위해정보 보고시스템’을 통하여 관계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의 평가) 해외정보리포터가 제출한 보고서는 평가위원회에서 별표 6 서식의 식의약품등 보고서 평가기준에 따라 정보 등급과 수당지급이 합당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종합보고서가 등록되지 않은 최초보고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 ①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의 보고서에 대해 제9조의 평가를 거쳐 각 보고서에 대한 수당을 별표 7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가 당해 월에 3건 이상의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보고서 중 우수한 정보로 평가된 보고서를 심층보고서로 분류하여 심층보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담 해외정보리포터는 당해 월 5건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국내 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정보는 예외로 한다.

③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가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회의에 참여할 경우 별표 7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활동 평가 등) ① 식약처장은 매년 해외정보리포터의 정보 수집 활동 등에 대하여 별표 8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약처장은 우수한 정보를 보고한 해외정보리포터에게는 식약처장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촉 기간) ① 해외정보리포터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식약처와 해외정보리포터 간의 상호협의를 하에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외정보리포터가 위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촉의 해지) ①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 정보수집활동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해외정보리포터에 대해서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해외정보리포터가 귀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3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2013.1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위촉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해외정보리포터로 위촉된 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11.27.)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에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5.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외정보리포터 지원서

해외정보리포터 지원서			
<인적사항>			
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가/지역(도시)	
E-mail		연락처(핸드폰)	
주소(영문)			
주소(현지어)			
해당국 체류기간	년 개월	해당언어 실력	
최종학력		전공	
현직장(학교)		재직(재학)기간	년 개월
<지원동기>			
<정보수집계획>			
1.			
2.			
3.			
<해외정보리포터 약관>			
1. 해외정보리포터는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2. 해외정보리포터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3. 해외정보리포터는 타인의 정보·자료를 표절 또는 무단전재하지 않으며,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4. 해외정보리포터는 수집한 정보·자료를 식약처의 동의 없이 타 기관, 인터넷 등에 무단배포하거나 개인적으로 도용하지 않는다.			
5.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다.			
해외정보리포터 약관 동의 여부		동의합니다.()	
<검토결과> (지원자는 작성하지 않음)			
선발 여부			
검토자 의견			

※ 기타송부 : foodsafety@korea.kr(이메일) 또는 +82-43-719-1750(팩스)

[별표 3]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최초보고 양식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최초보고서 (20 . . .)			
보고자			
성 명		국가/지역(도시)	
E-mail		전화번호	예시) 국가-지역-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조사내용			
제 목			
정보내용 (서술식)			
키워드 (요약)	정보출처기관		
	발표(방송)일자		
	제품		
	원인		
	물질 함유량		
	제조회사(판매회사)		
	현재피해내용		
정보출처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별도첨부
 ※ 송부: (이메일)foodsafety@korea.kr 또는 (팩스)+82-43-719-1750

[별표 4]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종합보고 양식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종합보고서 (20 . . .)			
보고자			
성 명		국가/지역(도시)	
E-mail		전화번호	예시) 국가-지역-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조사내용			
제 목			
정보요지			
추가정보	발표(보도)사항 정리		
	정부관계자 및 소비자 등 인터뷰 내용		
	소비자 동향 등		
종합의견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별도첨부
 ※ 송부: (이메일)foodsafety@korea.kr 또는 (팩스)+82-43-719-1750

[별표 5]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심층보고 양식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심층보고서 (20 . . .)			
보고자			
성 명		국가/지역(도시)	
E-mail		전화번호	예시) 국가-지역-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조사내용			
제 목			
주요내용			
향후전망			
기타 (참고사항 등)			
정보출처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별도첨부

※ 송부: (이메일)foodsafety@korea.kr 또는 (팩스)+82-43-719-1750

[별표 6] 식의약품등 보고서 등급

1. 보고서 평가기준

평가 요소	평가항목	점수
필요성	☐ 중·장기적으로 식의약품등 안전관리 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인가? ☐ 정보의 제출시기가 적절한가? ☐ 상황을 계속 주시하거나 참고할 필요가 있는가?	40점
활용성	☐ 정보의 활용가능성이 높은가? ☐ 정보내용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정리되어 있는가? ☐ 증빙자료는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40점
충실성	☐ 정보가 보고서 양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가?	20점

※ 정보 활용사례

- 수입·판매중단, 수거·검사, 회수·폐기, 허가사항 변경, 안전성서한 배포 등의 조치
- 기준·규격 제·개정
- 정책, 가이드라인 제안
- 시험법 개발
- 모니터링 및 위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2. 보고서 등급

보고서 등급	점수
매우우수	90점 ~ 100점
우수	70점 ~ 89점
보통	50점 ~ 69점
미흡	30점 ~ 49점
매우미흡	30점 미만

[별표 7] 수당 지급 기준

1. 회의 참석 수당

-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회의에 참여 할 경우 1회당 100,000원을 지급

※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가능

2. 수시·심층보고서 제출 수당

(단위: 원)

보고서 평가등급	수시보고(1건)	심층보고(1건)
매우우수	110,000	360,000
우수	90,000	280,000
보통	70,000	200,000
미흡	50,000	120,000
매우미흡	미지급	미지급

※ 수시보고 수당은 월 최대 2건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담 해외정보리포터는 4건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별표 8] 해외정보리포터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수시보고 (40점)	수시보고 제출건수	점수
	15건 이상	30
	14건 ~ 10건	20
	9건 ~ 5건	10
	4건 ~ 1건	5
	미제출	0
	※ 우수보고서 제출 가산점수 : 우수이상 보고서 1건당 1점 가산 (최대 10건에 한함)	
심층보고 (50점)	심층정보 제출율(%)	점수
	70% 이상	40
	69% ~ 50%	30
	49% ~ 20%	20
	19% ~ 최소 1건	10
	미제출	0
	※ 우수보고서 제출 가산점수 : 우수이상 보고서 1건당 1점 가산 (최대 10건에 한함)	
교육참여 (10점)	연간 교육참여 횟수	점수
	2회 이상	10
	1회	5
	불참	0

※ 1년간 평가한 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 1차 경고, 2차 해촉 처리할 수 있다